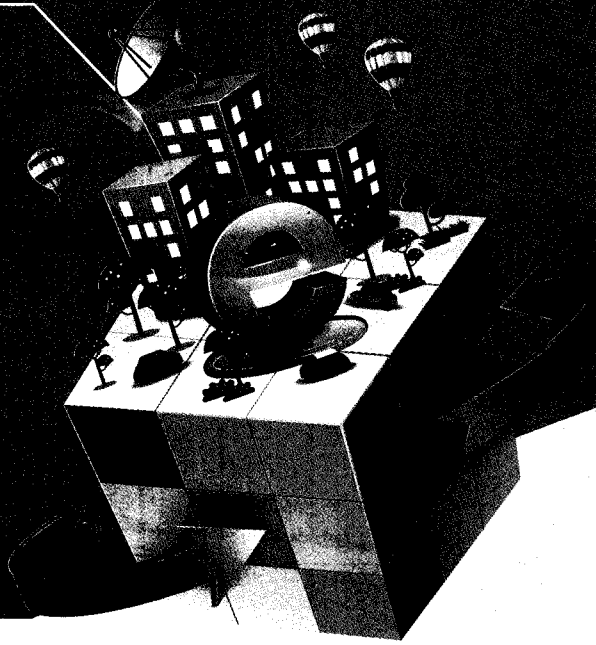


# 건설 소식

CONSTRUCTION NEWS



##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고의지연땀 과징금 부과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납품단가를 조정하면서 조정시점을 지나치게 늦추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또 피신고인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용역위탁 거래도 분쟁조정으로 처리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원재료 재고물

량 등과 상관없이 납품단가 조정을 지나치게 늦출 경우 '성실한 협의 의무'를 어긴 것으로 간주해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조합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일 기준을 기본계약서를 체결한 날로 하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 하도급대금, 물량 등이 기재된 개별 발주서를 교부한 날을 계약체결일로 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분쟁조정 의뢰기준이 다른 위탁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기준인 피신고인 매출액 '50억원 미만'을 '5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용역위탁에 대한 분쟁조정 의뢰기준이 상향조정돼 관련 하도급분쟁의 빠른 해결과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대상 건물 확대**

학교 · 문화 · 체육시설 등으로...  
녹색건축실적 가점제, 지자체 · 공공기관  
자체 발주 공사도 적용

에너지효율 1등급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공공 건축물 대상이 공공청사에서 학교와 문화, 체육시설로 확대된다. 현재 조달청이 운영하는 녹색 건축 실적 가점제는 지자체단체나 공공기관이 자체 발주하는 공사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향상'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업무시설(청사)에만 적용하던 에너지효율 1등급 달성 의무화 규정이 학교나 문화체육시설, 군사시설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도 높아진다. 현재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은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이 300kWh/m<sup>2</sup> 미만이지만 이를 250kWh/m<sup>2</sup> 미만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것. 여기에 등급에 관계없이 친환경인증만 취득하면 되는 친환경인증 제도는 2등급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1등급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술제안방식을 녹색건축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기술제안방식은 상징성이나 기념성 등을 고려한 건축이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에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녹색건축의 경우 기술제안입찰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기술제안방식 활성화를 위한 제도운영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달청이 운영 중인 녹색 건축 실적 가점제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자체 발주공사에도 적용된다.

조달청은 에너지효율과 친환경인증 1등급을 받은

받은 건설사에 대해 PQ(입찰자격사전심사)에서 가점(각 1점)을 주고 있다.

이율러 친환경인증이나 에너지효율 인증 등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설계비용은 추가적으로 반영한다.

기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에스코(ESCO) 사업의 투자비 회수 기간은 창호와 단열을 포함하는 경우 15년으로 확대된다. 에스코 사업은 에너지 전문업체가 사용자를 대신해 에너지절감 시설을 설치하고, 에너지 절약분에서 투자비를 일정기간 분할상환 받아 수익을 내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현재 에스코 사업은 투자비 회수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있고, 재원도 부족해 창호와 단열 등의 시설 개선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축 공공건축물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공공건축물은 내년까지 30% 이상 LED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준이 없다.

여기에 노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시 재정이나 금융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소관 부처별로 녹색 리모델링 계획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 도시를 조성할 때는 에너지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용적률과 조경기준, 높이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녹색 건축을 민간부문에도 확산시키기 위해 민간에 적용할 수 있는 설계 · 시공 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고, 경제단체나 대형건축물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건축물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것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에 600개 녹색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시범사업 결과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사업계획을 조정하기로 했다.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에너지·신기술 반영 개정**  
ISO·KS규격, 건물에너지효율 등급제 등  
추가

국토해양부는 변경된 표준 및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용어를 수정하고, 신기술공법을 반영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해 공고했다.

이번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이용 신기술분야를 보완하고 건축기계설비시스템의 성능검증 및 성능보증기술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ISO, KS규격 및 한국설비기술협회 규격을 반영하고 국토해양부관련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환경관련법이 반영됐다. 또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제를 반영하고 참조규격, 단체규격 및 국제규격을 참조표준, 단체표준, 국제표준으로 변경해 표기했다. 이밖에도 설비시스템의 성능 및 에너지 효율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커미셔닝 절차를 적용하고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감안해 각종 신재생에너지와 미활용에너지 이용 설비기술 내용을 추가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분쟁, 중재 해결  
소규모기업까지 '저변 확대'**  
민간건설·중소액 사건 급증...  
분쟁금액은 63.6% 감소

건설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인식이 민간

소규모 기업들에게까지 저변확대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재원에 접수된 건설중재 신청사건은 건수가 55건으로 작년 49건보다 12.2% 증가한 반면 분쟁금액은 823억원으로 작년 2261억원에서 63.6%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건설사건 비중도 작년에 건수 29.5%, 금액 56.2%에서 올해는 건수가 34.6%로 5.1%포인트 늘었지만 금액비중은 47.4%로 8.8%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공공건설의 대형분쟁 신청이 줄어든 반면 민간건설 사건과 공공건설의 중소액 사건이 늘었기 때문으로,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이 민간 소규모 기업들에게까지 저변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부문별로는 민간부문 사건이 건수(37건)와 금액(483억)에서 각각 전년 동기대비 27.6%, 43.9% 증가했다. 이는 민간업체들의 중재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사후합의 등 중재조항 활용도가 높아진 데 기인한 것이다.

공공부문 사건 건수는 20건에서 18건으로 10% 줄고, 금액은 1926억원에서 340억원으로 82.3% 급감했다. 분쟁금액별로는 5억 이하 소규모 사건이, 공공부문의 경우 1억이하 사건도 3건이 발생하는 등 작년 4건에서 9건으로 늘었고, 민간부문에서는 23건으로 작년보다 1건 줄었다.

5억 초과 50억원 이하 중견규모 사건은 민간부문의 경우 작년 3건에서 올해는 11건으로 급증했고, 공공부문에서는 9건에서 4건으로 줄었다. 공공부문에서는 50억 이상 대형분쟁도 6건에서 올해는 2건으로 급감했다.

청구원인별로는 민간부문의 경우 공사(잔)대금 청구가 14건으로 주를 이루는 가운데 손해배상청구가 작년 3건에서 올해는 11건으로, 추가공사비 청구는 2건에서 7건으로 크게 늘었다.

공공부문의 경우 작년에는 추가공사비 청구가 8건으로 집중됐으나 올해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